

# 전세임대주택 지원 안내

##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 -

20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사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가능 주택 등에 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셔서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계약완료)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전화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팀**

## 계약체결 절차

\* 고객님은 신규(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LH 지정 위임 법무법인을 통해 권리분석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본인이 신규대상자임을 사전에 알려, 지역별 지정법무법인을 이용하여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을 진행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① 또는 ②] 선택)

입주자  
(중개사)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희망주택을 구하여

#### ① 팩스로 아래 서류제출하여 권리분석 요청

\* 접수처:

인천지역(인천광역시) 법무법인 헌암(전세임대 계약팀)  
(☎032-710-0007, 팩스 070-7610-2821)  
경기지역(부천시) 법무법인 서린(전세임대 계약팀)  
(☎032-428-3022, 팩스 070-7610-7141)

<서류제출>

(필수서류) 지원신청서(첨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제출서류) 확정일자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현황,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해당자만) 수급자증명서

### 계약가능여부 검토 및 통보

↓  
  
↓  
입주자  
(중개사)

▷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 여부 결정·통보

- 지원 가능시 : 전세임대 계약팀과 계약 가능일 협의
- 지원 불가시 : 전세주택 다시 물색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법무법인↔임대인  
법무법인↔입주자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 부담  
(반드시 입주자 본인 사전 준비)  
▷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4주 후부터 입주(잔금 지급) 가능

###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

↓  
입주자  
↓  


▷ 계약 후 잔금지급일 4일전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공사에 주민등록등본 필히 제출

- \* 제출방법 : 팩스 032-232-4994
- \*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 잔금 지급불가
- \* 주민센터에 따라 전입불가할 경우 LH로 연락

### 잔금지급 및 입주

↓  
  
↓  
임대인

▷ 공사 :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 지급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 **입주 후 주소이전 및 퇴거 절대 불가**

**★ 우리공사 승인 없이 사전에 임의로 (가)계약 체결 절대금지 ★**

## 입주자 유의사항

1.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기한내에 신청하시어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시면 자격은 종료되며, **대항력 유지의무(주민등록전입, 무단퇴거 금지)**가 있습니다.
2. 우리공사 사전 승인(권리분석 승인)없이 임의 (가)계약 절대금지
3. 부채비율에 맞추어 이면계약 하는 행위 절대금지
4. 각종 권리관계(근저당권, 전세권 등) 말소조건 승인시 **잔금지급 10일전까지 반드시 말소 되어야 함**
5. 잔금지급은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접수일로부터 **4주 후** 지급가능하며, **잔금지급 4일전 까지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만약, 실태조사 등으로 주소이전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월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함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제49조의4)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거주하시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수시로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10년(별도의 자격검증(주택 및 도시기금여부, 소득등)없이 거주 가능)
  - ※ 기본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추가 10년 거주 가능
  - ※ 단, 재계약 시점에 임대료 미납이 없고,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 전세지원한도액 : 환산보증금과 최대 지원한도액 중 큰 금액(지역 무관)

#### ①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단, 월임차료가 있는 경우 월임차료를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② ①의 환산보증금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전세임대 최대 지원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지원한도액 (\* '24.11.기준 신혼·신생아II 수도권 기준 2.4억)

### ■ 입주자 부담금 : 200만원

-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함

### ■ 전세보증금 한도

- 입주자가 초과 금액 부담 시, 최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체결 가능. 단, 환산보증금이 더 클 경우 해당 환산보증금을 전세보증금 한도로 함
  - \* 신혼·신생아II 수도권 기준 2.4억 기준 최대한도 6억 ('24.11.기준)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등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환산 보증금 > 최대 지원한도액의 250%	환산 보증금 < 최대 지원한도액의 250%	5인 이상인 경우
환산보증금	최대 지원한도액의 250%	250% 초과 가능

#### ※ 전세임대 기금이자 이율변경 ※

- 시행일 : 2025.07.01.
- 시행일 이후 신규계약 체결건
-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0.2%p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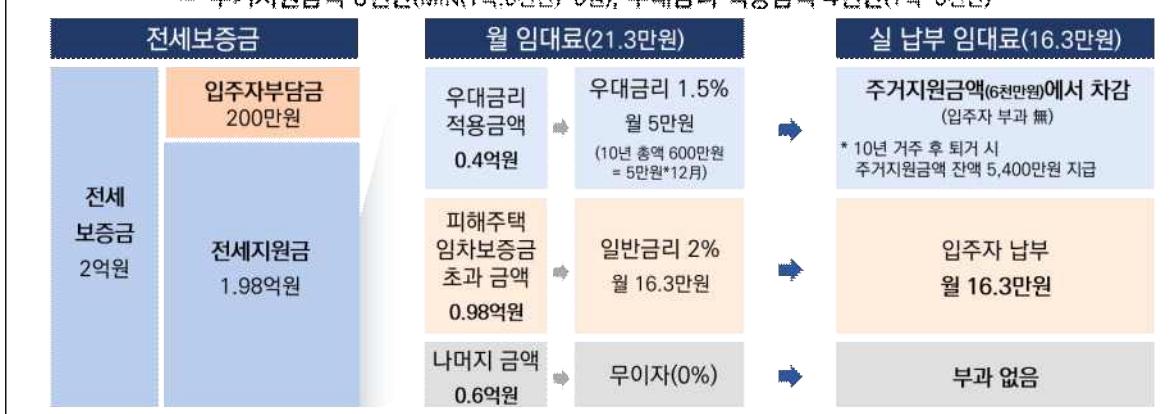
□ (월 임대료) 주거지원금액 유무에 따라 임대료 부과방식 상이

① 주거지원금액 있는 경우

1) 차감 임대료 (입주자 부과 無)	우대금리 적용금액 규모에 대한 0.5%p 금리 할인 (주거지원금액에서 차감, 소진 시 ‘② 주거지원금액 없는 경우’와 동일)
2) 입주자 부담 임대료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을 초과한 지원금액은 일반금리 적용하여 입주자 부담
3) 전세지원금 중 ‘우대금리 적용금액+피해주택 임차보증금 초과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임대료 부과 없음 (무이자, 0%)	
※ 단, 전세지원금이 ‘우대금리 적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전세지원금에 대한 0.5%p 금리 할인 (주거지원금액에서 차감, 입주자 부과 無)	

▶ (작용사례) 전세보증금 2억,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1억, 경매차익 6천만, 공체금액 없음

☞ 주거지원금액 6천만(MIN(1억, 6천만)-0원), 우대금리 적용금액 4천만(1억-6천만)



② 주거지원금액 없는 경우

1) 정부지원 임대료 (입주자 부담 無)	전 세지원금 중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규모에 대한 0.5%p 금리 할인
2) 입주자 부담 임대료	전 세지원금 중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에 일반금리 적용

※ 단, 전세지원금이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전세지원금에 대한 0.5%p 금리 할인 (정부지원 임대료 발생, 입주자 부담 無)

▶ (작용사례) 전세보증금 2억, 피해주택 임차보증금 1억, 주거지원금액 없음, 우대금리 적용금액 1억



■ 지원가능지역 : 전국

※ 인천본부 관할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외 사업대상지역에 지원을 원하시는 고객은 **이첨신청서[#불임4]**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2-232-4994 )

-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등재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전세**”로 계약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에 적합한 주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지원가능)
- 현재 거주중인 주택(피해주택)에 대하여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 **[#불임1 참고]**
- 건물 및 토지가 등기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
-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은 실내 바닥난방이 되어 있고,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전세지원 불가주택**

- ▶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주택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단, 각각의 소유자 모두가 전세계약 체결 시 가능)
-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 미등기 상태인 경우  
단, 임대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물은 가능  
(분양계약서만으로는 지원 불가)
-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 기타 우리 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 지하세대 원칙적 금지 (단, 침수방지시설중 차수판(불막이판) 설치되어있는 경우만 허용)

## 5

## 권리분석 요청 및 계약체결

우리공사에서는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업무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해당업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주택권리분석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신 후, 법무법인 측에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시고 유선(전화)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전세주택을 물색하여 권리분석 요청 및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 권리분석 요청시 제출서류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전세임대 지원신청서에 선순위 임차내역(방개수, 보증금 및 월세조건)과 임차되지 않은 방개수(주인거주 포함)를 정확히 작성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집합건물(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그 외의 경우(단독, 다가구 등)에는 “토지·건물 각각의 등기부등본”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지 여부 확인용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대항력 유지여부 확인 및 세대원수 확인
임대인제출서류	주택의 임대차정보(확인일자부여현황 또는 확인일자현황) 1부 임대인(소유주)의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본)

☞ 팩스 접수후 주택의 **권리분석 소요기간은 7일 정도**이며, 계약체결가능 여부는 중개업소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 ◆ 권리분석 및 계약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팩스
인천지역 법무법인 현암 (인천광역시 담당)	권리분석, 계약	032-710-0007	070-7610-2821
	계약해지 상담	032-710-9090	070-7610-2893
경기지역 법무법인 서린 (경기도 부천시 담당)	권리분석, 계약	032-428-3022	070-7610-7141

■ 입주자는 권리분석 승인 통보 후 계약금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에서 계약 일정 확인 후 입주자, 임대인(소유자)이 함께 공인중개사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 건물 및 토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모두 방문계약 체결해야 함)

■ 공사에서 지원되는 전세금은 잔금지급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 중개보수 및 도배장판비용 지원

### ■ 중개보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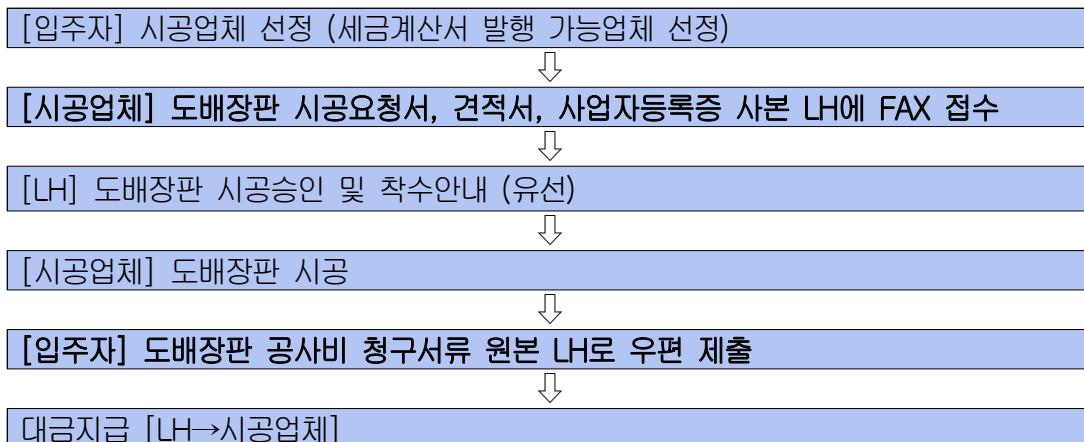
- 법정수수료 기준으로 LH 전세지원금별 차등지원하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LH전세지원금	중개보수	기타
1억이상 3억미만	보증금 * 0.3%	* 오피스텔은 예외
5천이상 1억미만	보증금 * 0.4% (한도 30만원)	
5천미만	보증금 * 0.5% (한도 20만원)	

- 오피스텔은 [전세금 \* 0.4%]
-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의 중개보수는 입주자 부담
- **거주기간 6개월 이내에 이주 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는 입주자 부담**

### ■ 도배·장판비용 지원

- 전체 지원기간 중 10년당 1회에 한해 도배 및 장판 시공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 호당 지원한도는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까지이며 시공면적, 시공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시공총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대금 지급은 신청 후 **4주 후**에 지급됩니다.
- 시공 후 3개월 이내에 대금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사비 청구 증빙서류

- ① 세금계산서 1부(도장 날인)
  - 부가세 포함금액이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6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송부메일 : 개별안내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131-82-137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② 통장사본 및 거래약정서(도장 날인 및 통장 사본과 동일한 계좌번호 기입)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도배·장판 시공확인서 (입주자 날인)
- ⑤ 공사 전/후 사진
  - 전/후 확실히 구별될 수 있고 먼 거리에서 방 전체가 보이도록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

## 임대료 등 납부 관련 안내

- 월 임대료 고지서는 공사에서 매월 20일경 발송이 되며 임대료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입주자 분께서는 ☎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셔서 임대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15일 이후 입주하시는 분의 임대료는 다음 달 임대료에 합산되어 부과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므로 임대료 체납이 없도록 철저히 임대료 납부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기록이 단 1회라도 발생하는 경우, 추후 해소 여부에 관계없이 차기 재계약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 자동이체방법
  - 월임대료 고지서를 지참,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자동이체신청
  -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가 원칙
  - 카드자동이체로 납부할 고객께서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10일 이전 신청시 당월 임대료부터, 11일 이후 신청시 익월 임대료부터 반영
- 2021년 7월 1일 이후 순수전세계약(보증부월세 제외) 중 주거급여 수급세대는 LH임대료가 직접 수납됩니다.
-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월세 납부)는 매월 약정한 날에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개인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예금주 : LH전세임대)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상담 032-710-9090)

전세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직원 등 개인명의 계좌로는 절대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우선공급 신청한 경우 주택물색기간 제한 없으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지원기간은 지원 횟수와 관계 없이 최초 임대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간 임대료 지원
  - 이주 등으로 미입주 기간 발생하더라도 임대료 지원 종료 시점은 동일  
※ (예시) 최초 임대기간 시작일이 2024.12.07.인 경우 2034.12.06. 지원 종료
  - 임대료 지원금액 한도는 총 주거지원금액과 정부지원 임대료 합계액은 보증금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임대료 지원종료 시 잔여기간은 정상임대료 부과
-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또는 일부라도 **변제\*** 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토부 또는 LH에 해당 사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경매종료 전 입주자의 매분기별 배당내역 확인 후 보증금 손실액 범위 조정할수 있습니다.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법원통지서 등이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공공임대유형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전세임대주택에서 타 공공임대유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 하며, 상속외 명의변경(혼인 및 이혼)은 불가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기간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에 당첨되신 분들은 현 전세주택 명도 및 전세금 회수가 완료된 후에 이주가 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 **지원자격유지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퇴거 희망일 최소 3~4개월전까지는 우리공사로 연락주셔야 하며, 재계약 횟수에 산입되어, 총 전세임대 지원기간이 줄어들고 계약중도 해지에 따른 비용(중개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집주인)과 사전에 전세금 반환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 입주자는 우리공사가 주택소유자에게 전세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사일) **4일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 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변제 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지원이 중단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주거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등으로 주소이전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 되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에서는 따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주택을 자세히 살피시어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시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기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후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택소유주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중도해지가 어렵고 계약기간(2년) 동안 거주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개인정보(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있을시 필히 공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 LH 지원가능 주택 심사 기준

대상주택의 [주택가격#1의 90%]에서 [부채금액#2]을 뺀 금액이 희망 전세보증금보다 큰 주택이어야 함

### #1. 주택 가격 산정 방법

- ①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세
-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 ③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최근 주택가격의 140% 해당금액
- ④ 신규분양주택(오피스텔 포함)인 경우 분양가의 90%(공공분양이 아닌 경우 겉인계약서상 분양가) 인정
- 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40% 해당금액
- ⑥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에서 제공하는 시세
- ⑦ 오피스텔인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최근 가격의 140%

### #2. 부채 금액 산정 방법 (①, ②, ③ 의 합산)

- ① 당해 주택 또는 토지에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근저당 설정액
- ② 당해 주택의 다른 호에 설정된 전세권 금액(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주택의 경우)
- ③ 당해 주택의 다른 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총액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 선순위 임차금 총액은 공인중개사가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실 및 임대인 거주부분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추가

[붙임 2]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최근 3개월 내 발급분만 유효함)
주택소유자 (임 대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li> <li>· 도장 및 신분증 지참</li> <li>·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공사제공]</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li> </ul>
입 주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li> <li>· 본인 발급분 <u>가족관계증명서 상세</u>(본인, 배우자) 각 1부</li> <li>· 등기부등본 1부</li> <li>· 자격증명서(수급자)</li> <li>· 도장, 신분증</li> <li>·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 [공사제공]</li> <li>· 전세임대주택지원에 따른 서약동의서 [공사제공]</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공사제공]</li> <li>· 계약금 (계약 당일 반드시 입주자 본인이 사진에 준비)</li> </ul>
공인중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li> <li>·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li> <li>· 통장사본 (중개사 명의)</li> <li>·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공사제공]</li> <li>· 중개보수 영수증</li> </ul> <p>※ 일반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p>

❖ 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전세계약 위임용, 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자필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자필 서명시) 제출
- 대리인 신분증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나 이민자인 경우는 추가 제출서류가 있사오니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서 양식은 우리 공사 기준에 따름

## [붙임 3] 지원신청서

<b>LH 전 세 임대 지원신청서</b>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계약	
<b>신청인</b>	신청유형 ( <input type="checkbox"/> 란✓표시)	<input type="checkbox"/> 기존주택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신혼·신생아(I / II)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주거취약 <input type="checkbox"/> 긴급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 <input type="checkbox"/>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전세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집전화			
<b>입주희망 주택현황</b>	주소				소유자	
	주택유형 ( <input type="checkbox"/> 란✓표시)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형생활) <input type="checkbox"/>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복합) <input type="checkbox"/>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 <input type="checkbox"/> 란✓표시)	$m^2$ (방 개)	$\ast$ 85 $m^2$ 초과 시 <input type="checkbox"/> 5 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녀 3명 이상
				매매증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전세    전세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    전세금액 : 원, 월세금액 : 원				
	<b>선순위 임대차현황 등</b> <small>(증거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의 ④, ⑩번 항목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등기부상 등재된 금액 제외)</small>		<small>* 지원대상 주택이 단독, 다가구주택, 복합인 경우에 한해 별첨 서류 작성            * [별첨1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서]            * [별첨2 도면 관련 작성 방법 및 예시]-해당층에 여러 호수가 사는 경우에 한해 작성            *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가 가능한 공간 모두 포함</small>			
<b>공인중개사</b>	<b>업체명</b>			<b>전화번호</b>		
				<b>사업자등록번호</b>		
<b>제출서류 (주민번호 전부표시)</b>	<b>신청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li> <li>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li> <li>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li> <li>매매계약서(매매증인 주택에 한함)</li> <li>입주 희망주택 등기부등본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 토지 모두 제출)</li> <li>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재계약일 경우에만 해당)</li> </ul>				
	<b>임대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의 임대차정보 (확정일자 부여현황 또는 확정일자 현황)*특정본 불가</li> <li>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li> <li>전입세대확인서</li> </ul>				
<b>유의사항</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리분석 승인 전 기계약을 할 경우 지원불가 주택으로 판명 시 기계약금 등 모든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li> <li>임대인이 신용보험사의 보험사고자로서 신용보험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li> </ol>					
<b>인천지역 법무법인 헌암</b>		TEL. 032-710-0007	FAX 접수	<b>신규</b>	070-7610-2821	
				<b>재계약</b>	070-7610-2891	
<b>부천지역 법무법인 서린</b>		TEL. 032-428-3022	FAX 접수	<b>신규, 재계약</b>	070-7610-7141	
위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날인)			
공인중개사			서명(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 · 다가구 · 상가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용)

임차목적물 주소지 : \_\_\_\_\_

(단위:원)

층수	호수	계약 유형	보증금	월세	방개수	최우선변제보증금	비고
합계							

※ 작성방법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양식상 좌측부터 모든 층, 호수, 계약유형에는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여부,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금액, 방개수를 작성. 최우선변제보증금은 미기재

※ 관리비는 별도이며, 계약서(확정일자 부여현황)상 명시된 보증금, 월차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비고란에 입주할 곳은 “입주희망”, 현재 거주중인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기존임차인”, LH입주자가 있는 경우 “LH입주자”, “공실”, “임대인거주”, “상가임차”, “창고”등으로 기재

본인은 상기 주택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함

화 인 자	임대인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상호			대표자	(인)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동 서류는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함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귀중

[붙임 4] 이첩신청서

**전세주택 지원지역 이첩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_신규)

- 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할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전세임대주택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오니 해당지역 관할 본부로 이첩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현 당첨지역(시)	이전 희망지역(시)	비고

\* 붙임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까지 명기

20 년 월 일

위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귀하

※ 팩스 : 032-232-4994 (인천지역)

[붙임 5] 연락처

- ❖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 1670-0002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팀
- ❖ 권리분석 및 계약 관련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팩스
인천지역 법무법인 현암 (인천광역시 담당)	권리분석, 계약	032-710-0007	070-7610-2821
	계약해지 상담	032-710-9090	070-7610-2893
경기지역 법무법인 서린 (경기도 부천시 담당)	권리분석, 계약	032-428-3022	070-7610-7141



한국토지주택공사